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0. 8.



여 성 가 족 부

(가 족 지 원 과)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,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(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, '21. 7월 시행)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 관련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본인은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3)
- 나.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·퇴소 절차 및 기준 정비(안 제9조의6)
- 다.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수 정비 등(제10조의2 [별표3]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 제1항 중 “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지원대상자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, 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지원대상자: 본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)
2. 지원대상자의 친권자, 후견인 등 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: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제9조의6 제3항 중 “14일 이내”를 “7일 이내”로 하고, 제4항제4호 중 “질서문란행위”를 “아동방임, 학대, 알콜중독, 마약, 시설기물파손, 기타 질서문란 행위를”로 한다.

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
(제10조의2제2항 관련)

○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의 수

시설 유형	시설 규모	종사자의 수							
		시설장	사무국장	생활복지사	생활지도원	간호사	영양사	조리사	관리인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1)기본생활 지원형	30세대 초과	<u>1</u>	<u>1</u>	<u>1</u>	<u>4</u>				<u>1</u>
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3</u>				1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1	1	<u>2</u>				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2)공동생활 지원형	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3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3) 자립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2</u>				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1)기본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3</u>			1	1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1	1	<u>2</u>			1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2)공동생활 지원형	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3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3) 자립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2</u>				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다.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1)기본생활 지원형	70명 이하 50명 이상	1	1	5	<u>5</u>	1		1	1
	50명 미만 30명 이상	1	1	3	<u>4</u>	1		1	1
	30명 미만 10명 이상	1	1	1	<u>2</u>	1		1	
다.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2-1)공동생활 지원형(미혼모자)	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3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다.미혼모자가족복지 시설 2-2)공동생활 지원형(미혼모)	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<u>1</u>		<u>1</u>	<u>1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<u>1</u>		<u>1</u>					
라.일시지원복지시설	70명 이하 30명 이상	1	1	1	<u>4</u>			1	1
	30명 미만 10명 이상	1	1	1	<u>2</u>			<u>1</u>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)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<u>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(無人)민원발급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.	제3조의3(한부모가족증명서의 발급) ①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지원대상자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, <u>별지 제1호서식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.
< 신 설 >	1. <u>지원대상자: 본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)</u>
< 신 설 >	2. <u>지원대상자의 친권자, 후견인 등 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: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</u>

	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제9조의6(복지시설의 입소·퇴소의 절차 및 기준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에 따라 입소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<u>14일 이내</u>에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신청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입소 결정 전까지 신청인을 임시로 입소시켜 지원할 수 있다.	제9조의6(복지시설의 입소·퇴소의 절차 및 기준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----- ----- ----- -----<u>7일 이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입소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에서 <u>질서문란 행위를</u> 하여 퇴소가 필요하다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	④ (현행과 동일) 1. ~ 3. (현행과 동일) 4. 입소자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안에서 <u>아동방임, 학대, 알콜중독, 마약, 시설기물파손, 기타 질서문란 행위를</u> 하여 퇴소가 필요하다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
[별표 3]	[별표 3]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
(제10조의2제2항 관련)

○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의 수

시설 유형	시설 규모	종사자의 수							
		시설장	사무국장	생활복지사	생활지도원	간호사	영양사	조리사	관리인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1) 기본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1</u>				1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1	1	<u>1</u>				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2) 공동생활 지원형	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				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3) 자립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				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	1				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1) 기본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1</u>			1	1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1	1	<u>1</u>			1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2) 공동생활 지원형	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			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3) 자립생활	30세대 이하 20세대	1	1	1					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
(제10조의2제2항 관련)

○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의 수

시설 유형	시설 규모	종사자의 수							
		시설장	사무국장	생활복지사	생활지도원	간호사	영양사	조리사	관리인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1) 기본생활 지원형	<u>30세대 초과</u>	<u>1</u>	<u>1</u>	<u>1</u>	<u>4</u>				<u>1</u>
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3</u>				1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1	1	<u>2</u>				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2) 공동생활 지원형	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3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가.모자가족 복지시설 3) 자립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2</u>				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1) 기본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	1	1	1	<u>3</u>			1	1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1	1	<u>2</u>			1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 2) 공동생활 지원형	2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3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나.부자가족 복지시설	30세대 이하 20세대	1	1	1	<u>2</u>				

지원형	이상								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	1					
다.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1)기본생활 지원형	70명 이하 50명 이상	1	1	5	<u>2</u>	1		1	1
	50명 미만 30명 이상	1	1	3	<u>1</u>	1		1	1
	30명 미만 10명 이상	1	1	1	1	1		1	
다.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2)공동생활 지원형	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				
라.일시지원 복지시설	70명 이하 30명 이상	1	1	1	<u>2</u>			1	1
	30명 미만 10명 이상	1	1	1	<u>1</u>				

3) 자립생활 지원형	이상								
	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다.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1)기본생활 지원형	70명 이하 50명 이상	1	1	5	<u>5</u>	1		1	1
	50명 미만 30명 이상	1	1	3	<u>4</u>	1		1	1
	30명 미만 10명 이상	1	1	1	<u>2</u>	1		1	
다.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2-1)공동생활 지원형(미혼모자)	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1		1	<u>3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1		1	<u>1</u>				
다.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2-2)공동생활 지원형(미혼모)	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	<u>1</u>		<u>1</u>	<u>1</u>				
	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	<u>1</u>		<u>1</u>					
라.일시지원 복지시설	70명 이하 30명 이상	1	1	1	<u>4</u>			1	1
	30명 미만 10명 이상	1	1	1	<u>2</u>			<u>1</u>	